

‘제조물책임법’ 건설업은 사각지대가 아니다

올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특별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 3자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動產)’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재·설비 등에 대하여는 직접 제조물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발생시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 더해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건설업은 타 업종 이상의 높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재정경제부 규제정책과 소비자정책과 강형욱 과장, 삼성물산 법무팀 김성근 변호사,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원을 만나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글 | 왕희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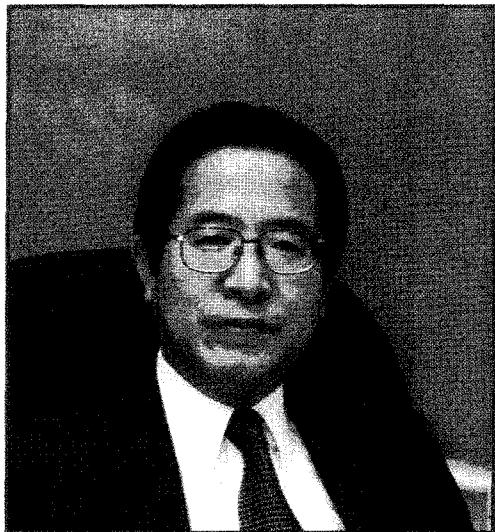


제조물책임법 제정 배경 및 의의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강형욱 과장은 “제조물책임(이하 PL)이란 제조사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사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PL의 입법은 직접적으로는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며 PL법 제정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PL법의 제정 배경은 첫째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민사책임법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충실히 구제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비자의 권익강화를 도모하고, 둘째 기업으로 하여금 단순히 안전기준을 준수하기보다는 자주적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향상에 노력하게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나 이와 관련한 기업의 전략이 선진화가 불가피해져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조화의 측면에서 미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주요국 대부분이 PL법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PL법을 입법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수출제품이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PL



강 형 융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

PL의 입법은 직접적으로는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이 국내 제품을 사용할 경우 PL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배경을 갖고 있다고 강형욱 과장은 설명했다.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강형욱 과장이 설명하는 PL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L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경제부의 PL법 입법 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 건축물을 PL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분양 건축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논지에 의거 부동산은 제외된 바 있다.

PL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적합한 제품이나, 건축물이란 본래 도급 계약에 근거한 개별 생산품이 일반적이며, 일반 제조물은 생산 과정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3자나 소비자의 감시가 불가능하나,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제3자의 감시가 존재한다.

부동산은 제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한다. 즉 건축물이란 일정한 수명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유지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건축물은 다종 다양하여 제조물 책임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어려움이 있다. 생산 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하도급업자, 자재

공급업자 및 발주자 등이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생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만을 제조업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반 제조물과 달리 건축물은 건설업자와 소비자간에 명확한 계약 관계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PL법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사용된 건자재 및 설비·부품 등은 PL을 적용받고 있다.

PL법을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는 서비스와 전기 등의 무체물 및 공동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 관계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PL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PL법의 제조자의 범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로 정하고 있다.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foreseeable) 사용 형태,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지

제조물책임과 다른 손해배상책임과의 구별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책임의 성격	계약책임	계약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 필요 여부	과실 필요	과실 불필요	과실 불필요	과실 필요	과실 불필요
손해배상범위	모든 손해	제품 자체	보증 내용	모든 손해	확대 손해

녀야 하는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 결함, 설계 결함, 경고 결함이 있는데, 특히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에 비하여 소비자가 그 결함을 주장·입증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혹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조자는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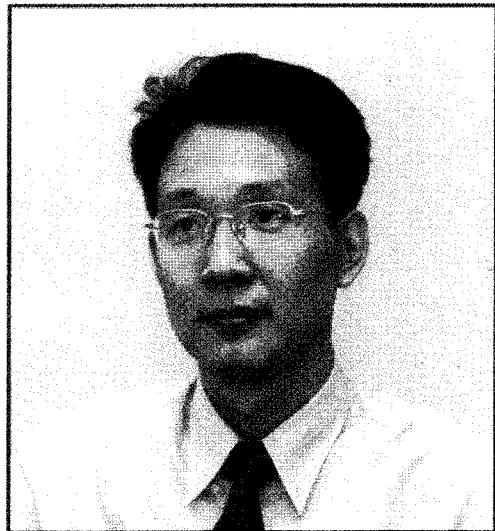
PL의 책임 존속기간은 피해자가 손해·결함 및 제조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제조물 공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제조물책임의 부문별 영향

건설공사와 PL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고 되어있다.

삼성물산 법무팀 김성근 변호사는 현행법상 제조물은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하므로 건설공사의 결과물인 아파트, 도로, 플랜트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 외국입법례를 보면 일, 프랑스, EU 등은 부동산의 일부인 동산을 포함하는 경우이며, 중국은 건설공사는 제외하나 자재, 부재, 및 부품, 설



김 성 근

삼성물산 법무팀 변호사

특히 플랜트공사 부문에서는 PL 적용 소지가 많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대형플랜트의 경우 소비자가 발주자에 한정되고, 사실상 건물과 동일하게 토지에 정착된다는 점에서 적용여지가 많지 않으나, 용이하게 분리 가능한 소형플랜트의 경우에는 동산으로 볼 수 있어 PL이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는 포함시고 일본은 동산만을 규제한다. 또한 미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동산도 인정된다고 한다.

이렇듯 현행법은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다수의 소비자 보호 취지, 다른 외국입법례 및 판례, 현행법상 영업자의 책임경감 규정 등을 고려하면 발주처에 납품하는 순수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적용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고.

김성근 변호사는 말했다.

부문별로 토목공사는 부동산의 일부인 동산이 포함될 여부가 많지 않으며, 주로 소비자가 국가기관 등 발주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여지가 적다고 분석했으며, 건축공사에서는 아파트, 오피스 등 건축물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소비자가 다수이고, 건축물에 부착된 동산(가령 창틀, 조명 등 건축자재)이 다수 있으므로 자재 등에 결함이 존재하면 PL을 질 소지가 상당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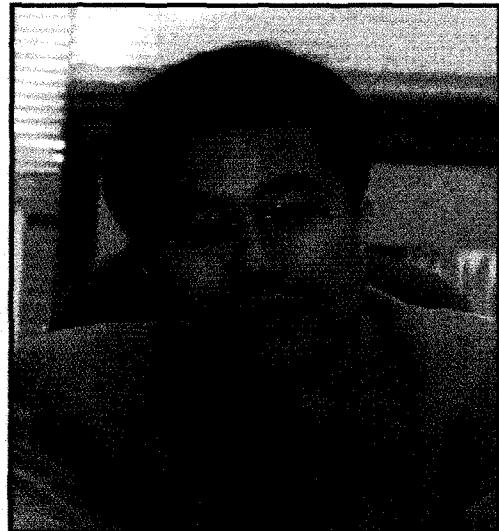
김성근 변호사는 특히 플랜트공사 부문에서는 PL 적용 소지가 많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대형플랜트의 경우 소비자가 발주자에 한정되고, 사실상 건물과 동일하게 토지에 정착된다는 점에서 적용여지가 많지 않으나, 용이하게 분리 가능한 소형플랜트의 경우에는 동산으로 볼 수 있어 PL이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건설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방안

PL법이 시행되면 건설업에 미칠 영향은 무척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원이 제시하는 건설업의 PL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PL법의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체가 PL으로부터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는 설치(공사)밖에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책임밖에 없으나, 가공을 한 행위는 제조자에 포함되고 PL을 부과받게 된다.

건설업자가 직접 내·외장재, 설비, 위생도기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하였다면, 그 건재·설비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확대된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건설공사에는 많은 주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발주자, 설계자(공사 감리자), 시공자(일반건설업자 등) 등 의 각 주체가 각각 부과된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PL책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시공 부분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견적서, 부품제조업자의 납품서, 발주자 의 주문서·지시서 등의 다양한 문서를 시공 안전 마다 정리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손해에 대하여는 수입업자인 건설업자에게 PL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분쟁 처리는 민사 소송에 의한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PL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해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사에는 많은 주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발주자, 설계자(공사 감리자), 시공자(일반건설업자 등) 등의 각 주체가 각각 부과된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PL책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시공 부분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견적서, 부품제조업자의 납품서, 발주자의 주문서·지시서 등의 다양한 문서를 시공 안건마다 정리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는 자재·설비 공급업체와 계약시, PL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자재·설비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PL보험 가입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분양업자나 건설업자는 주요 설비·부품의 제조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표시제조업자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의 매도시에는 이용자에게 건축물이나 설비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인지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안전 및 경고 표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재나 설비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취급설명서를 전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인도하고,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클레임 항구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클레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PL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이용자에게 인지시키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주택의 PL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업계 공동으로 주택제조물책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민수 연구원은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재경부 강형욱 과장도 “업계단체를 중심으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기능을 가진 PL센터 등을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PL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주택PL센터 등 총 18개 분야에 PL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또한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PL관련 보험 개발도 유도하여 PL분쟁시 기업경영에 타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부동산이 PL법의 적용소지가 적다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은 제조물을 최종 구조물로 완성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건설업이 PL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

건설기업이 건설에 투입된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대립할 경우 양자간 손해보상과 분쟁시비과정에서 막대한 직·간접의 피해를 초래, 경영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을 주지하고 PL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구매와 제조, 최종 납품에 이르는 건설의 전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위주의 사고예방과 분쟁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전사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으로 PL법이 시행되면 많은 잡음이 일어나겠지만 소비자의 권익강화, 기업의 경쟁력제고, 국제적 조화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이런 장점들이 더욱 크게 부각되어 업계,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법으로 안착되었으면 한다. ⑪